월드컵경기장관리규정

제정 2002. 8.31 규정 제409호
개정 2003.11. 7 규정 제454호
개정 2005. 5.20 규정 제501호
개정 2006. 1. 9 규정 제539호
개정 2008.12.11 규정 제622호
전부개정 2016. 7.12 규정 제819호
개정 2016.11.18 규정 제836호
2017. 4.26 규정 제896호
2019.12.31 규정 제999호
2022.11. 2 규정 제10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월드컵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경기시설"이라 함은 관람석을 포함한 주ㆍ보조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및 이의 사용에 필요한 부속 시설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라 함은 경기시설을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광판 음향, 냉ㆍ난방, 전기, 조명시설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변무대, 회원실 및 회원실 식당, 리셉션 홀 등을 말한다.
4. "임대시설"이라 함은 할인매장ㆍ스포츠시설, 예식장, 복합영상관, 사우나, 식음료 매점, 사무실 등을 말한다.
5.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임대시설에 대하여 공단과 대부 또는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직무대행)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근무제도) 처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 근무시간 및 휴무제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경기장의 개방 및 이용) ① 처장은 경기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경기장 시설에서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경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이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시설의 개ㆍ보수, 잔디 보호 등 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장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추정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받고 대체전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경기장을 일정기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의2장 대관심사위원회 <신설 2019.12.31.>

제8조(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사전·정기대관 신청에 대하여 그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전문기관 등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심사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1. 내부위원 : 주무부서장, 해당팀장
2. 외부위원 : 문화, 체육,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③ 대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 등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19.12.31.>]

제9조(대관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7일전 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 참석으로 개회하며, 위원 본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위임자가 대리 참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긴급한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대면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19.12.31.>]

제10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대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소관사무 감독기관 공무원. 단, 상위법령에 감독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내부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사안의 심의에 적합한 내부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⑤ 본 조는 제9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대리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19.12.31.>]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처장은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4. 심의안건 5. 발언요지 6. 의결내용

②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19.12.31.>]

제3장 시설관리

제12조(시설물 대장) 처장은 경기장내 주요시설 및 재산에 관한 기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2.31.>]

제13조(수목관리) ① 경기장주변 부지의 수목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② 처장은 풍설해, 병충해 기타 사유로 도괴 위험이 예상되는 수목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녹지대 조성 등 기타 사유로 이식이 필요한 수목은 이식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19.12.31.>]

제4장 임대시설

제14조(임대시설의 대부 등) 경기장 임대시설의 대부 및 사용 · 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2.31.>]

제15조(관리비) ① 계약상대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임대기간 중 임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19.12.31.>]

제16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방은 임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은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은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 및 사업계획을 첨부한 공사 시행승인신청서를 공단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한 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1. 임대시설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시설 증설·이전·변경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
4. 외곽(출입문, 외벽, 유리 등)에 간판 및 광고물, 기타 표지 등 설치 및 부착
③ 계약상대방은 임대면적 중 공용면적에 임의로 각종 시설이나 비품,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2.31.>]

제17조(손해보험계약) 공단은 임대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18][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2019.12.31.>]

제18조(시설물안전관리 등) ① 계약상대방은 전기사업법,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처장은 경기장 및 임대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방과 계약서 이외에 별도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청소) ① 계약상대방은 각종 재해 및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임대시설 내・외에 자체 경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방은 자체적으로 자기 임대시설 내・외의 청소를 실시하여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임대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계약상대방의 책임하에 분리수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경기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경기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위생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및 시정요구) ① 처장은 제반준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처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시설의 운영상 위생, 환경, 안전, 보안사항 및 이용객 불만사항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21조(주차장 운영) 경기장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6.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제4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월드컵경기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및 제1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②·③ 생략

<별표 1> (제11조 제1항 관련)

관리비 산정기준

예산과목	주요항목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지급수수료	저수조청소, 정화조청소, 방역소독, 도시가스정기검사, 승강기안전검사, 전기설비안전진단, 냉각탑수질검사, 실내공기오염조사, 외벽청소, 냉온수기세관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 타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부과기준

○ 개별사용료 : 단가(kw당, ㎥당 등) × 사용량

○ 공동사용량 : 총비용 × 적용배분율

☞ 적용배분율(%) = (임대면적 / 총면적) × 100

※ 상기 항목은 경기장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신설 2019.12.3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 <신설 2019.12.31.>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